

'새미래민주당' 당헌

(2024년 11월 10일)

당 헌

[제 정 2024. 2. 4.]

[개 정 2024. 2. 21.]

[개 정 2024. 9. 7.]

[개 정 2024. 11. 1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새미래민주당’ 이라 하고, 약칭은 ‘새민주’라 한다.

제2조(목적) ‘새미래민주당’ 은 자유롭고 조화로운 사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정의로운 사회,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포용의 사회,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 한반도 평화 및 세계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지향한다.

제3조(조직)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시·도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새미래민주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강력한 정당민주주의를 추구한다.

② 새미래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보장하며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

제2장 당 원

제5조(당원의 요건) ① 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은 당비납부 여부에 따라 일반당원과 권리당원으로 구분한다.

③ 입당·탈당·복당·전적 및 권리당원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제8호는 권리당원에 한한다.

1.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
2. 당직선거 및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의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조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당규에 따라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당원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7. 당의 처분에 대해 당규에 따라 이의할 수 있는 권리
8. 합당과 해산할 경우 토론권과 투표권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제3호는 권리당원에 한한다.

1. 당헌·당규를 준수할 의무
2. 결정된 당론을 따를 의무
3.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할 의무
4. 윤리규범을 지킬 의무

③ 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당원의 권리행사 요건, 절차, 방법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특별배려) ①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후보자를 임명·추천함에 있어서 유권자 수에 비례하여 지역, 여성, 청년 당원에게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② 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과 청년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한다.

③ 각급 선거에서 당의 후보자 지원활동을 한 당원, 당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한 당원, 기타 당에 특별히 기여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직 및 당내 선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8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조(당원소환제) ① 당원은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당대표 및 선출직 당직자에 대해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당원소환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①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②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한다.

③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제11조(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② 당원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한다.

제3장 당기구

제1절 전국당대회

제12조(구성) ① 전국당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상임고문과 고문
4. 중앙상무위원
5. 전국운영위원
6. 당 소속 국회의원
7. 정책연구소의 장과 차급의 장
8.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9. 시·도당위원장
10. 지역위원장
11.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12.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13. 중앙당 사무직당직자
14. 전직 국회의원, 전직 국무위원,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중 당원인 자
15. 중앙상무위원회가 선임하는 700명 이하의 대의원

- 16.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 17. 각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추천하는 5명
- 18. 중앙당의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가 정한 시·도당 법정 유급사무원
- 19. 각 지역위원회가 선출하여 추천하는 10명
- ③ 전국당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다.
- ④ 전국당대회 의장은 전국당대회에서 선출한다.

제13조(권한) ① 전국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 2.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 3.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
- 5.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 ② 전국당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전국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4호의 의결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소집) ① 전국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전국당대회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당대회 의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의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당대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하고, 부의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5조(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 ① 중앙상무위원회는 전국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① 전국당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국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당대회 의장 및 부의장
6. 상임고문 및 고문
7. 중앙상무위원회 위원
8.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9. 사무총장
10.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11. 사무처 산하 위원회 위원장, 대변인, 비서실장, 사무부총장, 정책연구소 차급의 장
12. 시·도당위원장
13. 당 소속 국회의원

14. 지역위원장
 15.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16. 당 소속 구청장·시장·군수
 17. 각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기초의회의장단 중 1인
 18. 중앙당 국장급 사무직당직자
 19. 시·도당 사무처장
 20. 새미래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추천하는 4명의 전국운영위원
 21.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임하는 20명 이하의 전국운영위
- ③ 전국운영위원회는 당대표가 의장이 되고 부의장 2명을 둔다.

제17조(권한)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대회 기능의 대행
 2. 전국당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당의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전국당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5.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6. 중앙상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처리
 7.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8.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결정
 9.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 ② 전국당대회가 위임한 사항은 재위임할 수 없다.

제18조(소집)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 순으로 소집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상무위원회

제19조(구성) ① 당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되는 중앙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상무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운영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한다.

③ 중앙상무위원회 위원은 전국운영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국회부의장
5. 전국당대회 의장
6. 전국운영위원회 의장
7.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8. 사무총장
9.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10.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11. 시·도당위원장
12. 당 소속 시·도지사
13.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각 1인

14. 원외지역위원장협의기구의 대표 1인
15.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는 여성, 청년 등 5명 이하의 중앙상무위원회 위원

제20조(권한) ① 중앙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의 개정안 발의
2.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당규의 제정과 개폐
4. 전국당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처리
5.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회의 승인
6. 최고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처리
7.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보고 청취
8. 전국당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9.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10.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당대회의 승인
11. 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12. 임시전국당대회, 임시 시·도당대회, 전국운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상무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최고위원회가 중앙상무위원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소집) ① 중앙상무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 또는 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상임고문 및 고문은 중앙상무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절 당대표와 최고위원

제22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주요 회의 개최
2.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3.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한 사항

③ 당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 당대표의 권한, 비서실 구성과 운영, 보좌역 임명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대표 당선자로, 2위부터 6위 득표자를 최고위원 당선자로 하여 전국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제1항의 2위부터 6위 득표자 중 여성당선인 또는 만 40세 미만 당선인이 없을 경우에는 6위 또는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득표자와 만 40세 미만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한다.

제24조(임기) ①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궐위 시 후임자 선출) ① 당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당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전국당대회를 개최하여 당대표를 선출한다.

② 궐위된 당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며, 원내대표가 유고 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에 따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당대표가 선출될 때에도 같다.

③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6조(선거인단 구성 등 위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절차, 선거인단 구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절 최고위원회

제27조(구성) ①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의결 및 당무 집행의 최고 책임기관으로서 최고위원회를 둔다.

②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대표 최고위원)
2. 원내대표
3. 제23조에 따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4.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

③ 최고위원회 의장은 당대표로 한다.

제28조(기능) 최고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주요 정책과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2. 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3. 전국운영위원회 및 중앙상무위원회 소집 요구
4. 의원총회 소집 요구
5.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6.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7. 최고위원회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8. 임시 시·도당대회 개최 요청에 대한 허가
9.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9조(소집) ① 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상임고문, 국회부의장, 정책연구소의 장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최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0조(상임고문)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원로 약간 명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상임고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당무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절 사무처

제31조(구성) ①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고 그 아래로 당규로 정하는 위원회와 실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실무기구를 둔다.

③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3명 이하의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④ 당의 정책과 견해 발표, 언론 홍보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대변인을 둔다.

⑤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 ① 사무직당직자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아래에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무직당직자는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후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사무직당직자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위원회

제33조(상설위원회) ① 주요 당무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설위원회를 설치·구성한다.

② 상설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4조(특별위원회) ①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종류와 업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정책연구소

제35조(정책연구소) ①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한다.

② 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소 정관에 따른다.

제9절 시·도당

제36조(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 ①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지역 현안 및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심의기관이다.

②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최고위원
4. 시·도당위원장
5.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③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지방분권 정책에 관한 심의
2. 국정 및 당무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에 대한 예산 배분에 관한 심의
4. 최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한 권한

④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⑤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7조(시·도당대회) ① 시·도당대회는 시·도당의 대의기관이다.

② 시·도당대회의 대의원은 제13조에 따른 전국당대회 대의원 중 해당 시·도에 소속한 자로 한다.

③ 시·도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시·도당대회 대의원명부 확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도당대회에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둔다.

제38조(시·도당대회 권한) ① 시·도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위원장 선출
2. 시·도당상무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처리
3. 중앙당이 요구하는 안건처리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안건 의결

② 시·도당대회는 시·도상무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시·도당대회 소집) ① 정기 시·도당대회는 정기 전국당대회 개최일 전에 전국당대회준비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임시 시·도당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로부터 사전에 개최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시·도당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3. 시·도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4. 중앙상무위원회가 요구하는 때

제40조(시·도당상무위원회 구성) ① 시·도당의 의결기관으로 시·도당상무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1. 시·도당위원장
2. 지역구 국회의원
3. 지역위원장
4.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5. 당 소속 시·도의원 및 자치시·군·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6. 시·도당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하의 위원

③ 제2항 제6호의 시·도당상무위원은 시·도당위원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제41조(시·도당상무위원회 권한) 시·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2.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3. 당헌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전국당대회 대의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시·도당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5.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6.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7.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42조(시·도당상무위원회 소집) 시·도당상무위원회는 의장 또는 시·도당은 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상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중앙당의 지시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43조(시·도당위원장) ①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을 대표하고 시·도당을 통할한다.

②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되, 시·도당대회대의원 유효투표를 100분의 50 이하,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하여 선출한다. 단, 시·도당 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시·도당위원장의 궐위 시에는 운영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후보자등록 신청 개시일 전 90일까지 확정한다.

제44조(시·도당운영위원회) ① 시·도당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당위원장
 2. 시·도당상무위원회가 호선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운영위원
- ②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는다.
- ③ 시·도당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의 일상적인 당무와 정책의 심의
 2. 시·도당의 당직인사에 관한 심의
 3. 시·도당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심의
 4. 시·도당상무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채택
 5.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심의·결정
 6. 시·도당 자치규칙 제·개정안의 발의
 7.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5조(사무처 등) ① 시·도당에 사무처와 정책실을 두며, 사무처에 처장을 두고 정책실에 실장을 둔다.

② 시·도당 사무처는 당원명부의 현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

③ 시·도당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6조(지역위원회) ①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둔다. 이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

가 2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구성된 때에는 각 자치구·시·군별로 지역 위원회의 연락소를 둘 수 있다.

- ③ 지역위원회에는 지역위원장, 지역대회와 상무위원회 등의 기구를 둔다.
- ④ 지역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대규모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해 운영한다.
- ⑤ 지역위원장의 선출, 지역대회 및 지역상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47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제48조(권한)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일상적 원내 활동 대책의 심의·의결
2. 당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주요정책 및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과 의안의 심의·의결
3. 원내대표의 선출
4.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의 추천
5.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구성 및 폐지
6. 의원총회 운영 및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
7. 정당법 제3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제명
8. 기타 원내대책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제49조(소집) ① 의원총회는 국회 회기 중에는 주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최고위원회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② 원내대표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되,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대표가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③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8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원내대책회의) ①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둔다.

② 원내대책회의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대표가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내대책회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제2절 원내대표

제51조(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①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원내대표의 임기는 다음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단, 국회의 원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원내대표 임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며,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당선된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시작한다.

② 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어 중앙상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 또는 의원총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의원총

회에서 비밀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원내대표는 해임된다.

③ 원내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원내대표를 재선출할 때까지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내대표가 결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된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원내대표 선출과 불신임투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권한) 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원내 주요 회의를 주재한다.

③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원내대표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배정한다. 이 경우 국회상임위원회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호선한다.

⑤ 원내대책, 입법 및 정책 활동의 기획과 행정지원을 위하여 원내대표 아래에 실무기구를 둔다. 실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윤리심판원

제53조(설치와 직무의 독립성) ① 포상과 징계, 당헌과 당규의 해석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윤리심판원을 설치한다.

② 윤리심판원은 제3장 당기구 및 제4장 원내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4조(중앙당윤리심판원 구성) ①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심판원장과 부심판원장

을 포함하는 9명 이내로 심판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 ③ 제1항의 심판위원 중 당대표의 추천을 받아 3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의 추천을 받아 3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으며, 최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총 심판위원 중 2인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 ④ 중앙당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5조(중앙당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 ① 중앙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윤리규범 제·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상벌안의 심사·의결 및 결정
 - 3.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 4. 윤리규범에 관한 교육
 - 5.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상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와 결정
 - 6. 조직감사를 제외한 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 7. 당헌·당규에 관한 최종적 유권해석
 - 8. 시·도당윤리심판원장 임명
 - 9. 시·도당윤리심판원에 대한 감독
 - 10. 시·도당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의 권한
 - 11. 선출직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사건의 경중에 대한 심사와 결정
 - 12. 제33조 제1항 제2호 당무검증위원장 추천
 - 13. 기타 당규에 명시된 권한
- ②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심사 및 의결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심사기준과 방법은 중앙당윤리심판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56조(시·도당윤리심판원 구성) ① 시·도당윤리심판원은 심판원장과 부심판원장을 포함하는 7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도당윤리심판원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시·도당윤리심판원의 권한과 업무) ① 시·도당윤리심판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원과 당 외부 인사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해당 시·도당의 기강에 관한 조사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은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을 거쳐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당위원장이 시행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징계는 시·도당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시·도당윤리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시·도당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④ 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① 사무총장은 각급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로 기소된 경우 그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

② 사무총장은 위 제1항의 직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해당 여부에 관해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무총장이 위 제1항 또는 제2항을 해태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해당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④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각급 윤리심판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한다.
- ⑥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제1항의 직무정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6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5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선거를 실시하는 중앙당 및 시·도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하여 후보자 자격 및 당원자격을 박탈하고 형사고발 한다.
- ③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한 경우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④ 각급 당직선거와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선거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절 공직선거기구

- 제60조(선거대책기구 등)** ① 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다. 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 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중앙상무위원회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당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 ③ 제2항의 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 ④ 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① 당대표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외부인사를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이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 ④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정원이 짝수일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의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 ③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④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 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전략공천관리위원회) ①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앙당전략공천관리위원회(이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 의결로 설치한다.

- ② 전략공천위원회는 전략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 ③ 전략공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4조(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비례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성,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고르게 배정하되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한다.
- ③ 비례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제65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 대통령후보자는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

을 원칙으로 선출한다.

- ②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상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6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③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④ 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6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당대표는 제64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중앙상무위원회를 거쳐 전국운영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

- ② 당 취약지역에서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활동해 온 후보자를 당선안정권에

배려해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8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① 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 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②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 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시·도당과 협의를 거쳐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 선거구 수는 시·도별 해당 자치구·시·군의 장의 수가 10명 이하는 1, 11명 이상 20명 이하는 2, 21명 이상은 3으로 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9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후보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

여 의견을 개진한다.

- ③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④ 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0조(지역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지역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 라 한다) 추천은 해당 시·도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후보자는 해당 지역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과반수를 추천한다.
- ③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를 심사하여 제1항의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한다. 단,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역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 ④ 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와 동수로 선정된 때에는 시·도당상무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⑤ 후보자가 추천할 후보자의 수를 초과하여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1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2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지역상무위원회의 순위선정 및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3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① 재·보궐선거의 경우 최고위원회가 해당 시·도당과 협의하여 공직선거후보자 추천방식을 달리 정하거나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제74조(심사기준) ① 각급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각급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부정부패 범죄, 음주운전, 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④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경선

제75조(추천선거) ① 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방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조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2.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의 투표·조사결과를 100분의 50 이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선거인단 구성 비율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 ③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 경선 포함) 또는 당원경선(지역당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76조(가산기준) ① 경선에 참여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당해 선거일 기준 만 40세 미만)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를 따른다.

1. 해당 선거구에서 본인이 신청한 공직과 동일한 공직을 수행한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역위원장인 여성후보자, 장애

인후보자, 청년후보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3. 청년후보자는 당해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하는 100분의 25를 가산하고, 만 26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는 100분의 20을 가산하고, 만 30세부터 만 35세까지는 100분의 15를 가산하고,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까지는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본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4.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의 경증장애인은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이 경우 본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② 경선에 참여한 정치신인은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당규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이전 각급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당적불문).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당선되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2.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거나 타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 출마하였던 자

3. 시·도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제77조(감산기준)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후보경선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다만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대상 중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가 해당 공직선거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산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하고, 그 외 감산 적용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2. 시·도지사, 자치구청장·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이 각급 지방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이 경우 시·도당 및 지역상무위원회에서 비례대표광역·기초의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③ 경선불복 경력자와 탈당경력자,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76조 및 제77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15를 감산한다.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경력자는 100분의 10을 감산한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선불복경력자 :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
 2. 탈당경력자 :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탈당한 자. 이 경우,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단,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징계경력자 :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 결의로 감산하지 않을 수 있다.

제78조(중복적용금지 및 예외 등) 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경선 가·감산은 중복해서 부여하지 아니한다. 경선 가·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례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정하되 해당 선거구의 경선후보자 및 경선방법 확정시 함께 공표한다.

② 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방법

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

제79조(재심) ①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결과 또는 경선결과 발표시점은 해당 위원회가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 시점으로 한다. 다만, 전략공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제1항의 각 재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되,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당규로 정한다.

③ 각 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재심사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최고위원회는 각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후보자 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후보자 교체가 있을 때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0조(공직선거후보자의 인준) ① 중앙상무위원회는 인준 요청된 자가 공직선거후보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중앙상무위원회는 당규로 정한 기한 내에 공직선거후보자 인준요청이 없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상무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을 의결할 수 있다.

제81조(재추천) ① 공직선거후보자로 확정된 자의 입후보등록이 불가능하거나,

당규로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천을 무효로 하고 재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등록기간이 촉박한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앙상무위원회에서 추천을 무효화하고 후보자를 선정하여 재추천할 수 있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예산과 회계

제82조(예산과 결산) ①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당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예산편성안을 포함하는 당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당 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주요 사업방향
3.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향

⑥ 당 재정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는 최고위원회와 중앙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⑦ 당 재정운용계획은 공표한다.

⑧ 예산, 결산, 회계감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3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집행부서의 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에 회계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고,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예산결산위원장 및 위원은 당대표의 추천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④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최고위원회와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속 각 기관의 예산 집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 ⑥ 예산·결산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위하여 외부 회계전문가 1명이 회계감사에 참여해야 한다.
- ⑦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는 공표한다.

제8장 당헌 개정 등

제84조(당헌 개정안의 발의) 당헌 개정안은 전국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전국당대회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85조(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 ① 당헌 개정 발의가 있을 경우 전국당대회 의장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의장은 지체 없이 그 개정안을 공고하고 전국당대회 또는 전국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당헌 개정은 전국당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 또는 전국운영위원회 재적 전국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6조(당규의 제정 등) ① 당의 각급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의 회의 소집,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② 당의 각급 집행기관·부서 및 자문기관의 조직, 기구, 업무분장, 운영, 인원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③ 당규의 제정 및 폐지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발의 또는 재적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발의가 있는 경우 중앙상무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 ④ 당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제87조(당헌·당규의 해석) 당헌·당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9장 보칙

- 제88조(회의의 소집과 의사)** ①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각급 회의는 당헌과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적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대의원대회 등을 개의할 경우 출석의 방법은 온라인투표 참여로 한다.
- ③ 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및 의제를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의 출석편의를 고려하여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각급 회의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에 의 제지에 불응하는 대의원, 의원 또는 위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⑤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당헌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고 당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89조(표결) ①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안을 제외한 모든 의안은 당헌·당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

③ 인사, 당헌개정, 중앙상무위원회 표결, 주요 정책입안에 관한 표결은 비밀 투표로 한다.

④ 최고위원회 의결에 따라 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제90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대표 및 최고위원 과반 이상이 궐위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운영위원회는 당 운영과 비상상황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는 즉각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은 비상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집된 정기 및 임시 전국당대회, 전국운영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91조(합당과 해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당대회 또는 전국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국운영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상무위원회 또는 중앙상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다만, 시·도당이 소멸하였을 때에는 시·도당위원장이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

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92조(대표자 변경과 합당 시의 법정부채과 인장의 인계)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부채과 정당운영에 관련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93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소사유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부칙 <2024. 2. 4.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2월 4일 개최한 ‘새미래민주당’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당대표 선출 특례) 당헌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임명되는 당대표는 2024년 2월 4일 개최한 ‘새미래민주당’ 창당대회에서 정한 당대표 선출절차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및 특례) ① 당헌 제23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최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헌 제5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이후 최초의 중앙당윤리심판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당헌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당헌에 의한 당

규의 제·개정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④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는 당헌 제6장에도 불구하고 중앙상무위원회와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⑤ 창당대회 이후 첫 전국당대회는 2024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부칙 <2024. 2. 00. 제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00일 개최한 ‘새미래민주당’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규정 특례) 당헌 제6장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최초로 적용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기획단을 비롯한 후보자선출을 위한 기구 구성의 세부규칙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조(경과조치 및 특례) ① 당헌 부칙 제1호 제3조 3항에 의거해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규의 제개정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② 당헌 부칙 제1호 제3조 4항에 의거해 후보자 선출을 위한 중앙상무위원회와 전국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최고위원회에 위임한다.

③ 이 부칙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